

서울특별시 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3. 10. 24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.10.11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.10.15.
- 다. 상정일자 :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3.10.24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임 인 규 위생과장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식품위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,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명 변경 「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」로 개정
- 2) 「식품위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

- 3)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
- 4)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61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국민권익위원회의 「2012년 부패영향평가지침」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회 제척, 기피,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, 「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고,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